
- 2017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5,000원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3건					미소화 45 초과소화 240
2016.03.09	2016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용역(1차)	xxxx 설계공사	10,257	215	255	-40
2016.04.14	복사기 소모품비	fghj	1,770	265	25	240
2016.11.22	정화조 분뇨수거	kkkk 공사	1,243	25	30	-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용역(1차)’ 등 총 3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45천원을 미소화하고, 240천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45,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 고
계	6건	31,200				
1	2016.07.22	9,400	2016.08.01	○○○	1	
2	2016.10.18	7,200	2016.11.02	”	6	
3	2016.10.20	3,000	2016.11.02	”	4	
4	2016.10.21	2,000	2016.11.02	”	3	
5	2016.10.24	7,200	2016.11.02	”	2	
6	2017.02.17	2,400	2017.02.27	”	1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외에 있으므로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함에도, 2016.07.22 부터 2017.02.17까지 제증명 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6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기한 내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감증명 위임 발급 현황

연 도	인감증명 위임발급 건수	접수인 미달인 건수	발급번호 미표시 건수	무인 미달인 건수	비고
계	6건	3건	3건	3건	
2015	2건	2건	2건	2건	
2016	4건	1건	1건	1건	

2. 내 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 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 사무편람」 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에는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제출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인감증명을 위임 발급함에 있어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 후 발급번호 표시 등의 조치 없이 위임장을 보관 및 인감증명 대리발급자 무인 미날인 등 인감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 위임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반드시 무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호자와 주민등록 세대 분리된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번호	표지구분	성명	장애인 주소	자동차 소유주	보호자	보호자주소	비고
계		3명					
1	보호자 주차가능	김ff	노곡들예길	김ff	주rr	춘천시 영서로	
2	보호자 주차가능	김jj	시목길	김jj	박tt	삼척시 마달길	
3	보호자 주차가능	정cc	박걸남로	정cc	정yy	삼척시 오십천로	

2. 내 용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p115~p126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자동차의 명의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용 표지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하고(여기서 보호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함)

표지를 관리함에 있어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보호자의 주민등록 세대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폐기,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받은 3명에 대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분리 되었으나 발급된 보호자용 표지를 회수, 폐기 처리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련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받은 3명에 대하여 표지 회수, 폐기처리 하는 등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의료급여증 반납 미등록 및 미폐기자 : 4명

(단위 : 명)

구분	의료급여증 반납 미등록	의료급여증 미폐기	비고
계	4	4	
2015	1	1	
2016	3	3	

※ 세부내역 별첨

2. 내 용

『의료급여법』 제1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의료급여증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증 회수를 철저히 하고,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향후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반납 회수된 의료급여증은 보관에 따른 분실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납 회수된 의료급여증(김dd 외 3건)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의료급여증 반납현황에 미등록 하였고 또한 반납·회수된 의료급여증을 폐기 조치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증 반납·회수 등록 및 폐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의료급여증 교부·반납등록 하는 등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관리협약 내용 및 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마을명	관리협약기간	구체적사업내용	기금집행의 관리협약준수	2016 기금집행액	비고
합 계	'15.07.22~'20.07.21	포함5,미포함10	준수5, 미준수10	13,823,410	
11리	'15.07.22~'20.07.21	사업내용 포함	협약준수	2,354,550	
222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519,100	
333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0	
444리	"	사업내용 포함	협약준수	2,660,000	
55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0	
66리	"	사업내용 포함	협약준수	3,333,430	
777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0	
888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0	
99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0	
000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867,000	
132리	"	사업내용 포함	협약준수	2,306,330	
234리	"	사업내용 포함	협약준수	0	
56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700,000	
678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1,083,000	
789리	"	사업내용 미포함	협약없음	0	미검정

2. 내 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하‘조건불리직불제’)지침에 따르면 “조건불리직불제 보조금”(이하 ‘직불금’)지급요건으로 「농지관리의무 필수이행」 과 「마을공동 기금을 직불금의 20%이상 조성」 을 명시하고 있으며,

마을공동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들의 총회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또한,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대상 마을에서는 ‘조건불리지역관리협약’ (이하 ‘관리협약’)을 매년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관리협약’에 명시 하도록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7.03.14.현재까지 ‘조건불리 직불제 관리협약’을 ○○○ ggg를 비롯한 15개 마을에서 2015.07.22.~2020.07.21.까지 5년간으로 기간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마을 공동기금의 사용 용도를 ‘관리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의 ‘조건불리 직불제 관리협약’서를 관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대상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고,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관리협약’에 명시 하는 등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30,000원

【제 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명 : jjj리 도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 지적내용
 - 공사설계서상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단가산출적용 부적정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상기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구간 2공구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현장 진입도로 등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현장과 접한 지역은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의한 직접포설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현장 여건상 장비진입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시공량의 50%를 가산하여 포장품을 반영,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상기 경우를 살펴보면 표준품셈 10-3-2의 콘크리트 표층 인력시공 물량은 일당 100m³(T=20cm)로 되어있고, 콘크리트믹서트럭 후진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할 경우 상기 시공물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라고 명시

이는 현장 여건상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진입이 어려워 경운기 등 기타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단순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후진으로 진입을 한다고 해서 단가산출 적용시 시공물량의 50%를 적용해서는 안 될 현장임에도 적용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상기 현장(2공구)의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직접포설이 가능한 경우로서, 콘크리트(표층) 포설품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감액조정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설계적용 : $Q = 100\text{m}^3/\text{일} \times 50\% = 50\text{m}^3/\text{일}$
- 감액조정 설계적용 : $Q = 100\text{m}^3/\text{일}$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9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25건	14건	11건	
2015	11	4	7	
2016	13	9	4	
2017	1	1	-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리9반 주변 경관개선공사’ 등 총 25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90천원을 추가로 소화하고, 490천원을 미소화 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49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50,8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정부합동감사 수감	kkk	2016.9.5	춘천	82,000	74,000	8,000	
2017 직불제 교육참석	hhh	2017.1.12	홍천	119,000	76,200	42,80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

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정부합동감사 수감' 등 2건에 대한 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교통비 및 식비, 현지교통비를 정당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50,800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도	납입 지연 건수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자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계	34건	3,078,200				
2015	17건	1,491,700	붙임참조	●●●	붙임참조	
2016	14건	1,370,800	"	"	"	
2017	3건	215,700	"	"	"	

※ 세부내역 붙임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05.07부터 2017.02.20.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34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계	34건	3,078,200				
1	2015.05.07.	174,600	2015.05.11.	●●●	1	
2	2015.05.18.	133,000	2015.05.21.	”	2	
3	2015.05.19.	68,600	2015.05.21.	”	1	
4	2015.05.28.	83,100	2015.06.01.	”	1	
5	2015.06.19.	52,700	2015.06.24.	”	2	
6	2015.06.22.	81,100	2015.06.24.	”	1	
7	2015.07.14.	70,500	2015.07.16.	”	1	
8	2015.07.16.	92,200	2015.07.20.	”	1	
9	2015.07.20.	74,600	2015.07.22.	”	1	
10	2015.07.31.	29,400	2015.08.06.	”	3	
11	2015.08.03.	104,000	2015.08.06.	”	2	
12	2015.08.04.	61,100	2015.08.06.	”	1	
13	2015.09.04.	44,900	2015.09.08.	”	1	
14	2015.11.19.	68,200	2015.11.23.	”	1	
15	2015.12.09.	72,200	2015.12.11.	”	1	
16	2015.12.11.	86,000	2015.12.15.	”	1	
17	2015.12.21.	195,500	2015.12.23.	”	1	
18	2016.01.04.	144,500	2016.01.06	”	1	
19	2016.02.29.	119,700	2016.03.04.	”	2	
20	2016.03.02.	126,000	2016.03.04.	”	1	

연번	수수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21	2016.03.07.	107,600	2016.03.10.	●●●	2	
22	2016.03.08.	81,100	2016.03.10.	”	1	
23	2016.03.22.	88,600	2016.03.24.	”	1	
24	2016.04.04.	120,200	2016.04.06.	”	1	
25	2016.04.07.	69,800	2016.04.11.	”	1	
26	2016.05.12.	50,800	2016.05.16.	”	1	
27	2016.06.15.	87,400	2016.06.17.	”	1	
28	2016.10.12.	192,400	2016.10.14.	”	1	
29	2016.10.27.	49,100	2016.10.31.	”	1	
30	2016.11.21.	72,800	2016.11.23.	”	1	
31	2016.12.08.	60,800	2016.12.12.	”	1	
32	2017.02.13.	89,500	2017.02.15.	”	1	
33	2017.02.16.	63,000	2017.02.20.	”	1	
34	2017.02.20.	63,200	2017.02.22.	”	1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16,600원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원)

구분	연도별	건수	계	주민세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비고
계		2	216,600	180,500	36,100	
주민세 (재산분)	2015	1	108,300	90,250	18,050	
	2016	1	108,300	90,250	18,050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2건 216,6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216,600원을 징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호자와 주민등록 세대 분리된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번호	표지구분	성명	장애인 주소	자동차 소유주	보호자	보호자주소	비고
계		6명					
1	보호자 주차가능	차zz	도계읍 도계느티로	차zz	차qq	원주시 무실동	
2	“	이xx	도계읍 전두강변길	이xx	한ww	도계읍 전두강변길	
3	“	홍cc	도계읍 도계우회로	홍cc	홍ee	도계읍 장원길	
4	“	김w	도계읍 도계우회로	김w	김rr	삼척시 원당로	
5	보호자 주차불가	권bb	도계읍 전두강변길	김ll	김tt	도계읍 발이2길	
6	“	박nn	도계읍 도계로	최mm	남yy	동해시 임향로	

2. 내 용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p125~p157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자동차의 명의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용 표지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하고(여기서 보호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함)

표지를 관리함에 있어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보호자의 주민등록 세대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폐기,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받은 6명에 대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분리 되었으나 발급된 보호자용 표지를 회수, 폐기 처리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련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받은 6명에 대하여 표지 회수, 폐기처리 하는 등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의료급여증 반납 미등록 및 폐기 미조치 현황

(단위:명)

구분	의료급여증 반납 미등록	의료급여증 미폐기	비고
계	33	33	
2015	6	6	
2016	27	27	

○ 세부 명단 별첨

2. 내 용

의료급여법 제1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의료급여증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증 회수를 철저히 하고,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 부

정 사용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향후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반납 회수된 의료급여증은 보관에 따른 분실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납 회수된 의료급여증(권kk외 32건)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의료급여증 반납현황에 미등록 하였고 또한 반납·회수된 의료급여증을 폐기 조치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증 반납·회수 등록 및 폐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의료급여증 교부·반납등록 하는 등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5,157,000원

【제 목】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예정)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비고
계 - 3건				△ 5,157	
마교정수장~저구배수지간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		'17.03.23. 입찰	73,360	△ 3,824	낙찰율 미적용
jjj 입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17.03.17.	'17.03.20. ~'17.05.03.	19,584	△ 972	
hh1리 gg방앗간 주변 급수관로 교체공사	'17.03.17.	'17.03.21. ~'17.05.04.	7,391	△ 361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7.02.15일 (주)dd측량 김ff와 계약 체결한 『2017년 수도시설 정비사업 측량용역』 결과에 의거 자체 설계한 마교정수장~저구배수지간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의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골재(보조기층재) 운반 단가산출시 화물차량의 평균주행 속도는 운반도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규정에 맞도록 도로별로 주행속도를 구분 적용하여야 하나,

일부구간 도로에 대하여 평균 주행속도 적용 착오(자동차 전용도로 21.4km), 또한 상수관로 보호를 위한 모래 부설 단가산출시 인력품 과다 적용(되메우기 m³당 0.1인 적용) 및 소형 고압블럭 포장의 경우 포장품에 모래부설 및 고르기 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래 부설품을 중복 반영하는 등으로 총 5,157천원/3건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5,157천원에 대하여 감액 설계하는 등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현황(2015.5.1~2017.3 존치기간 현재 기준)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	존치기간	위치	건축주	용도	연면적 (㎡)	비고
1	2015-8	2015.5.1	2017.3.18	@@리 328-10	(주)ss종합건설	현장사무실	63	

2. 내 용

「건축법」 제2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득한후 가설건축물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는 그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2015. 5. 1일 삼척시 ●●● @@리 328-10번지 내 (주)ss종합건설의 컨테이너 구조 현장사무실 용도 가설건축물(지상1층, 3동, 연면적 63㎡) 축조 신고를 수리한 후 그 존치기간이 2017. 3. 18일까지 임에도 감사 당일인 현재까지 철거 내지는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존치기한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철거 또는 존치기한 연장신고를 이행하는 등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정산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미정산 내역 : 4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 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고,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르면 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고,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5통3반 김uu 집뒤 옹벽보강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수급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처리함으로써 1,534,268원에 대하여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미정산 공사 4건에 대하여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정산처리 하시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도급사	지급액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금
계	4건		59,445,900	925,209	211,822	158,826	232,634	5,777
2016.05.12	○○○5통3반 김uu 집뒤 옹벽보강공사	ee토건	7,109,000	163,412	37,412			
2016.07.27	○○○18통 마을회관 뒷길 하수관로 개량공사	rrrrr공사	12,762,000	229,829	52,618	88,207	129,198	5,777
2016.08.12	○○○2통 경로당 신축공 사(기계설비)	(주)tt	15,366,900			70619	103,436	
2016.12.21	○○○1통 석축 정비공사	yy건설(주)	24,208,000	531,968	121,792			

※ 부가가치세 별도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1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2건					미소화 510
'15.05.06	○○○4통6반일원 마을안길공사	(주)qq건설	19,593	-	485	-485
'15.06.01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구입비	ww상사	1,958	-	25	-2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통6반일원 마을안길공사’ 등 총 2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510천원을 미소화 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51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18,682원

【제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기준일	계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TOP가맹점 적립 포인트	비고
2017.3.27.	318,682	16,817	301,865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5. 5월부터 2017. 3. 27. 감사일 현재까지 동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및 가맹점 적립 포인트 총 318,682원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318,682원을 세입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도	납입 지연 건수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자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계	20건	988,700				
2015	8건	349,000	붙임참조	○○○○○○○○○	붙임참조	
2016	12건	639,700	”	”	”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

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05.11부터 2016.12.13.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20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기한 내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계	20건	988,700				
1	2015.05.11	56,200	2015.05.14	○○○	2	
2	2015.05.12	40,200	2015.05.14	〃	1	
3	2015.05.14	29,000	2015.05.18	〃	3	
4	2015.05.18	44,200	2015.5.20	〃	1	
5	2015.07.30	26,800	2015.08.03	〃	4	
6	2015.08.21	35,400	2015.08.25	〃	3	
7	2015.09.07	72,400	2015.09.09	〃	1	
8	2015.11.02	44,800	2015.11.04	〃	1	
9	2016.02.15	91,200	2016.02.17	〃	1	
10	2016.02.24	106,900	2016.02.26	〃	1	
11	2016.04.22	31,300	2016.04.26	〃	1	
12	2016.04.26	34,800	2016.04.28	〃	1	
13	2016.05.02	39,800	2016.05.04	〃	1	
14	2016.05.16	52,300	2016.05.18	〃	1	
15	2016.05.26	28,900	2016.05.30	〃	1	
16	2016.11.09	30,500	2016.11.11	〃	1	
17	2016.11.15	54,200	2016.11.17	〃	1	
18	2016.11.18	45,100	2016.11.22	〃	1	
19	2016.11.28	90,100	2016.11.30	〃	1	
20	2016.12.13	34,600	2016.12.15	〃	1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감증명 위임 발급 부적정 현황

연 도	대리발급 건수	위임장 발급번호 미기재 건수	위임장 접수인 미날인 건수	비고
2015	139건	137건	4건	
2016	212건	212건	5건	
2017	26건	26건	-	

2. 내 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 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 사무편람」 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에는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제출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함에 있어 위임장 접수인 미날인 및 접수인 날인 후 발급번호 표시 등의 조치 없이 위임장 보관하는 등 인감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 위임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반드시 무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호자와 주민등록 세대 분리된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번호	표지구분	성명	주소	자동차 소유주	보호자	보호자주소	비고
계		5명					
1	보호자 주차가능	반00	삼척시 동해대로	반00	반**	삼척시 동해대로 아파트	
2	보호자 주차가능	김00	삼척시 새천년도로	김00	양**	전남 신안군 암태면	
3	보호자 주차가능	김00	삼척시 동해대로	김00	최**	인천광역시 서구	
4	보호자 주차불가	김00	삼척시 영진안길	김00	박**	삼척시 청석로	
5	보호자 주차불가	최00	삼척시 동해대로	최00	최**	원주시 치악로	

2. 내 용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p125~p148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자동차의 명의를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용 표지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장애인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발급되어야 한다.

표지를 관리함에 있어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보호자의 주민등록 세대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폐기,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보호자용 표지(주차가능, 주차불가)를 발급받은 5명에 대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분리 되었으나 발급된 보호자용 표지를 회수, 폐기 처리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련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받은 5명에 대하여 표지 회수, 폐기처리 하는 등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의료급여증 교부·반납 미등록 현황

(단위:건)

구분	의료급여증 교부 미등록	의료급여증 반납 미등록	비고
계	66	48	
2015	21	19	
2016	39	28	
2017	6	1	

2. 내 용

의료급여법 제15조 및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의료급여증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증 회수를 철저히 하고,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회수가 어

려운 경우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향후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반납 회수된 의료급여증은
보관에 따른 분실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도 의료급여증 교부·반납 사항을 입력
하여 관리하여야함.

그런데 ◎◎◎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부·반납 회수된 의료급여증(aaa
외 113건)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의료급여증 교부·반납현황에 미등록 하
였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의료급여증 교부·반납등록
하는 등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